

2022학년도 고양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



2021. 4.

고양국제고등학교

2022학년도 고양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 계획

1 근 거
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(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)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(입학전형방법)
-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-5950(2021.3.25), -6254(2021.3.29)호.

2 목 적

-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, 합리성, 타당성, 다양성을 확보로 본교 입학업무의 신뢰도 제고
-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본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

3 방 침

-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본교 설립 취지와 교육 과정 운영상 특색에 맞는 입학전형계획(안) 마련
-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
-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본교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입학설명회 및 홍보 실시
- 2022학년도 입학전형계획수립-운영-평가-환류를 통해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
-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필요한 사항과 전형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
-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은 별도 지침에 따름
-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식에 따름
- 이중지원은 절대 금하며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 지도
-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지원할 수 있음
- 국제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, 국제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됨
- 전·후기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
- 2022학년도 본교 고입 전형관리 업무는 추후 공지될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2022학년도 고양국제고 신입생 전형요항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
2022학년도 신입생 자기주도학습전형 계획

1. 전형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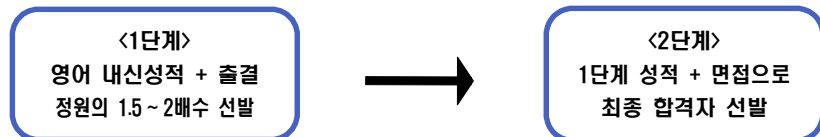
- 2022학년도 본교 신입학 전형요항은 추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
- 모집단위별 세부 지원 자격은 추후 확정될 2022학년도 본교 신입생 전형요항에 의한다.

2. 전형방법

○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'자기주도학습 전형' 실시

- (가)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, 모집 정원의 20%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으로 선발한다.
- (나) 학교생활기록부,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한다.
-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
 - 각종 인증시험 점수, 교과목의 점수.석차, 교내.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, 자격증, 영재 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요인 배제
- (다)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.
-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(꿈과 끼 영역-자기주도학습 과정,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)과 인성 영역(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,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),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
 - 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과 본부 진행요원으로 구성
 - 입학전형위원의 면접조 구성
 - 학교 위촉 입학전형위원 2인 이상(교내 교사 또는 외부위원 위촉)
 - 입학업무담당자 위촉 배제
 - 도교육청 위촉(타학교 위촉위원 포함)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위촉
- (라) 학교별 필기교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
- (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·적성검사, 외국어 면접·토론, 외국어 동영상 활용,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)

○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방법



(가) 1단계 : '영어 내신성적(160점) + 출결(감점)'로 모집 정원의 1.5~2배수 선발

-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: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

영어 내신성적 = 중 2,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

- *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원점수, 과목평균(표준편차)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 반영

-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 성적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반영함

3학년 2학기 국어→3학년 2학기 사회→3학년 1학기 국어→3학년 1학기 사회→
2학년 2학기 국어→2학년 2학기 사회→2학년 1학기 국어→2학년 1학기 사회

- * 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, 역사 과목으로 대체

- 중학교 2,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

성취도 수준	A	B	C	D	E
학기당 환산 점수	40	36	32	28	24

- *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우,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(예: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)

- * 중학교 졸업(예정)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, 우, 미, 양, 가를 활용하여 수는 A, 우는 B, 미는 C, 양은 D,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

- 출결 상황 산출 방식

출결 = - [미인정결석 일수 × 가중치]

- * 가중치는 2022학년도 입학요항 최종본의 기준에 따름

- 외국인, 특례입학대상자,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-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반영방법과 출결점수반영방법은 2022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요항의 내용대로 별도 산출식에 따른다.

(나) 2단계 : '1단계 성적(160점) + 면접(40점)'으로 선발

- 면접 점수 산출 방식

면접 = 자기주도학습 영역(꿈과 끼 영역) + 인성 영역

- ※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(집단 면접 불가)
- ※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
- ※ 1단계에서는 해당교과 내신성적 및 출결점수 외의 기타점수 반영 금지

- (다)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. (단, 타 시·도 중 2022학년도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(예정)자는 지원 가능)
- (라) 모집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. (단, 전형요항은 정시모집 시 승인 받은 것에 준하여 실시).
- (마) 추가모집 지원 자격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지원 조건과 동일하나, 2022학년도 고입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.
- (바) 추가모집에서도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원 내 결원 범위의 신입생을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6조, 제92조).

3.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

- 지원자격 :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
-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

(가)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

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- 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구, 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※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.
-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-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)
- ⑤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구, 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※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.
- ⑥ 학교장 추천 학생
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구, 차상위계층)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구, 차차상위계층)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※ '학교장추천위원회'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.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

[선정예시]

-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 의무자가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[객관적 증빙서류 예시]

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, 재산세납입증명서

(나) 2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

- ① 소년·소녀가장(형제·자매 포함)
- ② 조손가정 학생
- ③ 북한이탈주민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해당자)
- ④ 순직군경 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 자녀
- ⑤ 다문화가정 자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 해당자)
-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

(다) 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

-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(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)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(단,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)
-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(첫째 자녀부터 가능)
- ③ 준사관/부사관 자녀
-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(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)
-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
- ⑥ 한부모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~5호 해당자)
-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

○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

(가) 1단계 (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.5배~2배수 선발)

-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.5배~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.
-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1.5배~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.
-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.

(나) 2단계 :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.

-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%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.
-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, 2·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.

(다)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.

(라)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.

○ 기타

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(기준중위소득 160%)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'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'기준

4. 국가유공자 자녀(교육지원 대상자) 선발

- (가)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학교는 모집 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하며 일반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다. 다만,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

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모집 인원내 포함하여 정원내로 선발하되, 교육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%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. (일반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)

(나)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 대상자]가 발생할 경우 그 수만큼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.

5. 특례입학대상자 선발

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선발 대상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2호 및 3호 해당자로서, 본교 모집 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(단, 제1호, 제4호 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함).

구분			자격요건
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	제2호	가목	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
		나목	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		다목	외국인 학생 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)
북한이탈주민 등	제3호	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
6.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

-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(입학전형영향평가)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의 반영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다.
- 교육청은 학교별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해 심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.

5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

구분	업무내용		일정
전기 학교	■ 경기북과학고(과학고)	원서접수	2021.08.23.(월)~08.30.(월)
		전형기간(소집면접)	2021.11.19.(금)~11.20.(토)
		합격자 발표	2021.12.03.(금)
	■ 마이스터고	원서접수	2021.10.18.(월)~10.21.(목)
		전형기간	2021.10.25.(월)~10.29.(금)
		합격자 발표	2021.11.02.(화)
	■ 예술고	원서접수	2021.10.18.(월)~10.21.(목)
		전형기간	2021.10.25.(월)~10.29.(금)
		합격자 발표	2021.11.02.(화)
	■ 체육고	원서접수	2021.10.26.(화)~10.29.(금)
		전형기간	2021.11.01.(월)~11.05.(금)
		합격자 발표	2021.11.15.(월)
	■ 특성화고 ■ 일반고 특성화학과	[특별전형] 원서접수	2021.11.05.(금)~11.09.(화)
		[특별전형] 전형기간	2021.11.11.(목)~11.12.(금)
		[특별전형] 합격자 발표	2021.11.15.(월)
		[일반전형] 원서접수	2021.11.22.(월)~11.23.(화)
후기 학교	평준화지역 정시모집 ■ 일반고 ■ 자율형 공립고	[일반전형] 전형기간	2021.11.24.(수)~11.25.(목)
		[일반전형] 합격자 발표	2021.11.26.(금)
		[추가모집]	
		원서접수	2021.12.01.(수)~12.02.(목)
		합격자 발표	2021.12.03.(금)
	비평준화지역 정시모집 ■ 일반고·자율형 공립고	원서접수	2021.12.09.(목)~12.15.(수)
		배정 예정자 발표	2022.01.07.(금)
		배정 학교 발표	2022.01.28.(금)
		등록 기간	2022.02.03.(목)~02.07.(월)
		추가합격자 배정 및 발표	2022.02.14.(월)
		추가 배정학교 등록	2022.02.14.(월)~02.16.(수)
	자기주도학습전형실시교 ■ 외국어고 ■ 국제고 ■ 자율형 사립고	원서접수	2021.12.09.(목)~12.15.(수)
		1단계 전형기간	2021.12.16.(목)~12.17.(금)
		1단계 합격자 발표	2021.12.18.(토)
		2단계 서류접수	2021.12.20.(월)~12.21.(화)
		2단계 전형기간	2021.12.22.(수)~12.31.(금)
		2단계 합격자 발표	2022.01.03.(월)
[추가 모집]	■ 전기학교 미달교	원서접수	2022.01.10.(월)~01.13.(목)
	■ 비평준화 일반고·자율형 공립고 미달교		
	■ 외고, 국제고, 자사고 미달교	합격자 발표	2022.01.17.(월)

※ 이 전형일정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-19로 인한 학사일정 변동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합격자 발표는 정해진 발표일 이내에 공지될 수 있음

※ 대학수학능력시험일: 2021.11.18.(목)